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의2서식]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(kreach.mce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  | 발급일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| 90일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신청인<br>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) | 상호(명칭)   | 사업자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)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(대표자)  |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     | (전자우편: )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(사업장)   |                     | (전화번호: )<br>(팩스번호: )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신청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화학물질명<br>(총칭명)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유번호<br>(CAS No. 등 화학<br>물질 식별번호)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동제출 및 공동<br>활용 자료 종류 [ ]  | 분류·표시에 관한 자료 [ ]    | 물리적·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[ ] | 유해성에 관한 자료<br>[ ] | 시험계획서 [ ] | 위해성에 관한 자료 [ ] |
| 신청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·생산,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·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<br>[ ]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구체적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|      |   |               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1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<br>2.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(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br>3.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(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| 수수료<br><br>없 음 |
|------|---|----------------|

### 작성방법

- “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자료 종류”란은 분쟁 조정이 필요한 자료를 선택합니다.
- “구체적 사유”란은 분쟁이 발생한 주요 쟁점을 적습니다.

### 처리절차

